獸醫畜産關係法令

件名	公布番號 法律	令	規則	公布日 年月日
(大統領令又는閣令)				
釜山家畜檢疫所職制		127		49. 6. 6
藥事法	300			53.12.18
家畜保護法	306			54. 1.23
家畜保護法施行令		890		54. 4.14
獸醫師法	412			56.12.26
麻藥法	440			57. 5.31
獸醫師試驗令		1282		57. 4.23
獸醫師施行規則			(農)53	57. 6. 5
藥事法中 改正의 件	448			57.10. 5
家畜家禽專用의 取扱規程			53	57. 6. 5
家畜保護法施行令改正		1448		50. 2. 9
革命後				
家畜密屠殺特別處罰法 (國建令)		40		61. 6. 6
農業協同組合法	670			61. 7.29
農業協同組合法施行令		81		61. 8. 7
家畜保護法施行令改正		82		61. 8. 7
政府組織法	734			61.10. 2
※政府組織法廢止(法 552)				
農事敎導法改正法律	742			61.10. 2
(1)農事敎導法을 農事硏究敎導法으로				
(2)道知事所屬下에 道農事院을 둔다				
農林部 職制		182		61.10. 2
※畜産局에				
(1)畜政課				
(2)家畜衛生課를 設置				
農事院職制		183		61.10. 2
(1)獸醫部 設置				
濟州牧場職制中 改正의件		190		61.10. 2
釜山家畜檢疫所職制中 改正의件		189		61.10. 2
家畜傳染病豫防法	907			62. 3.22
農林部訓練院職制		361		61.12.26
食品衛生法	1007			62. 1.20
獸處理場및 化製場에關한法律	1003			62. 1.20
畜産物加工處理法	1011			62. 1.20
韓國馬事會法	1012			62. 1.20
畜産物加工處理에依한 畜産物檢查員에 關한件		604		62. 3.29
政府組織法中 改正法律	1038			62. 4. 1
※農林部長官所屬下에 農村振興廳新設 農村振興法	1039			62. 3.21
家畜傳染病豫防法 施行令		554		62. 3.22
韓國馬事會法施行令		580		62. 3.27
農村振興廳職制		615		62. 3.29
農林部職制中 改正의件		620		62. 4. 2
※畜産局에 (1)畜政課 (2)畜産課 (3)家畜衛産課				
農村振興廳職制		621		62. 4. 2
硏究및 指導公務員採用試驗規程		638		62. 4. 4
釜山家畜檢疫所職制中 改正의件		757		62. 5.15
※釜山家畜檢疫所를 國立動物檢疫所로 家畜檢疫公務員服制		782		62. 5.28
農村振興事業補助金 交付規則		809		62. 6.12
獸醫師法施行規則 改正의件			(農)100	62. 6.12
食品衛生法施行令	811			62. 6.12
農村振興委員規程	882			62. 7.16
家畜傳染病豫防法 施行規則			(農)108	62. 8.29
農事硏究指導委員會規程		1006		62.10.25
食品衛法施行規則			(保社)91	62.10.10

畜産物加工處理法施行規則 (1963. 2. 30 農林部令第 號)

第一條(檢査方法) 畜産物加工處理法(以下法이라한다)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檢査員(以下檢査員이라한다)의 檢査는 屠畜檢査·乳檢査·肉加工品檢査·乳加工品檢査와 卵加工檢査로 區分하여 農林部長官이정하는 檢査基準에의하여 이를행한다

第二條(檢査手數料) 法第3條第3項의 檢査手數料는檢査物價額의 1000分의 8 안에서 農林部長官이정하여 이를 告示한다

第三條(檢査申請) ① 屠畜檢査를 받고자하는者는 別紙第1號書式 기타의 畜産物의 檢査를받고자하는 者는 別紙第2號書式에의하 申請書에 檢査手數料를 첨부하여 市長(서울特別市長과 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또는 郡守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前項의 경우에 이미納入한 檢査手數料는 檢査를 받지아니하여도 返還하지 아니한다

第四條(同前) ① 乳加工品또는 肉加工品의 檢査를받고자하는者는 加工完了日부터 14日이내에 加工品의 種類및製造番號別로 申請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事由가있을때에는 例外로한다

② 前項의 申請에있어서는 그加工品을 포장하여 別紙第3號書式에의한 內容明細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五條(檢査試料) 檢査員은 檢査上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別紙第4號書式에의한 收去證을 교부하고 最少量의試料을 採取할수있다

第六條(作業場의 經營許可證의 교부등) ①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道知事(以下道知事라한다)는法第4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作業場의經營許可를 한때에는 別紙第5號書式에의한 許可證을교부하여야한다

② 道知事는 法第5條의規定에의하여 作業場의建築·改築또는大修繕의 許可를한때에는 別紙第6號書式에의한 許可證을 교부하여야한다

③ 道知事는 法第6條의規定에 의하여 作業場施設의 使用認可를 한때에는 別紙第7號書式에 의한 認可證을 교부여야한다

第七條(作業場의位置) ① 法第7條第1項의作業場의位置는淸潔하고 排水가잘되는 場所에있어야한다 다만 衛生上필요한設備가 具備되어있는 경우에는 例外로한다

② 人口 50萬以上의都市에는 特別地屠畜場이외의屠畜場은 設置할수없으며 道·市·郡所在地에는 簡易屠畜場을 設置할수없다

第八條(作業場의施設의種類와 設備基準) 法第7條第1項의作業場의施設의種類는 一般屠畜場·特別地屠畜場·簡易屠畜場·乳處理場과 畜産物加工場으로하고 그施設의設備基準은 別表와같다

第九條(許可事項의變更) ① 法律第4條의 規定에의한 作業場의經營者가 그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할때에는 別紙第8號書式에의한 申請書에許可證을첨부하여道知事에게 제출하여 그許可를 받아야한다

② 道知事는 前項의規定에의한 申請에대하여許可를 한때에는 許可臺帳에 그事由를記載하고 許可證을 改書하여 교부하여야한다

第十條(作業場의開業·廢業또는休業의申告) 法第9條第1號의規定에의한申告는 別紙第9號書式에의한申告書에의하여야한다

第十一條(自家用屠殺) ① 法第11條第2項第4號의自家用은 屠畜의全部 또는 大部分을 販賣에 供하지아니하는경우를 말한다

② 自家用屠殺을 할수있는 地域은 道知事가 정하여 이를告示한다

③ 自家用屠殺을하려하는者는 別紙第10號書式에 의한申告書를 屠殺하기 2日前까지 管轄面長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法第11條第2項第5號의規定에의한 承認은 당해地域이 島嶼 기타 事實上屠畜場을 이용할수없는 地域인경우에限하여 이를할수있다

第十二條(手數料) ① 道知事는法第14條의規定에의하여 屠殺解體 또는 乳處理의 手數料를 認可할때에는 다음各號의基準에 의하여야 한다

1. 屠殺解體手數料는 7頭當牛·馬는 200원 豚은 80원, 羊은 30원을 초과할수없다
2. 乳處理手數料는 原乳代의 5割을 초과할수없다

② 屠畜場 또는 乳處理場의 經營者는屠殺解體 또는 乳處理를할때에 手數料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金錢 또는 作業人員을 要求할수없다

第十三條(屠殺解體禁止등 道知事는 다음各號에 해당하는경우에는 法第16條의 規定에의하여 다음各號의 措置를取할수있다

1. 다음疾患에 罹患된獸畜은 食用을위하여 屠殺解

體를 금할수있다

牛疫·牛肺疫·氣腫疽·出血性敗血症·炭疽·鼻疽·假性皮疽·流行性腦炎·羊痘·豚파라지부스·狂犬病·乳房結核; 重症肺結核·汎發結核·甚한 營養不良으로이르킨 結核諸症·2個이상의 臟器와 그淋巴腺結에 核病變이蔓延된것 또는 急性結核의 病變을 나타내는것 膿毒症·敗血症·尿毒症·强直症·高度의黃疸·高度의水腫·腫瘍(骨·淋巴腺에 多發한것) 族毛虫病·中毒諸症(人體에有害할우려가있는것)·熱性諸病(高熱인것)

2. 다음의 疾病에 罹患된獸畜은 病變部分을 食用에 供하지 아니하도록 豫防措置를 하게할수있다. 炎症·外傷·腫瘍·甚한畸形症·灰變性症·放線菌腫·葡萄黴腫·萎縮症·寄生虫症·(寄生虫과分離할수없는 部分을 포함한다)·結核의病變이 1臟器 또는 淋巴腺에局限되었거나 結核病變이 2 또는 3의臟器 또는 그淋巴腺에 발생은 되었어도 變狀이 小部分에국한되고 急性結核의 病變을나타내지 아니한것·부루세라症의 血淸學的陽性 또는 疑陽性獸畜의乳房·生殖器및內臟

3. 다음各號의 1에해당하는牛 또는 山羊으로부터搾乳는 이를금지할수있다

가. 牛疫·炭疽·氣腫疽·牛肺疫·狂犬病·結核病·부루세라症·流行性感氣牛疸·黃疸·放線菌病·胃腸炎·乳房炎·膿毒症·敗血症·尿毒症·中毒諸症·腐敗性子宮炎 또는 熱性諸病에 걸린 牛 또는 山羊

나. 分娩後 5日이내의 것

다. 乳에 영향을주는 藥劑를投藥 또는 注射後 3日이내의 것

라. 生物學的製劑의 注射에의하여 현재 反應을나타내고 있는것

第十四條(合格表示) 法第18條의規定에의한 合格表示는 農林部長官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검」字와 作業場番號를 記入하여야한다

第十五條(乳등의容器) ① 牛乳·山羊乳·脫脂乳·還元牛乳와 크림의 販賣用容器는 淸潔하고 無色透明한 유리甁으로서 口徑 26미리미터 이상의 것이라야한다 다만 農林部長官의 承認을얻은 때에는 例外로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의한 容器에사용하는 紙栓은 製造時에 殺菌한것이 아니면 사용할수없다

③ 無糖煉乳·加糖煉乳·脫脂煉乳·加糖粉乳와調製粉乳의 販賣用容器는 密閉할수있는 金屬罐이라야한다 다만 農林部長官의 承認을 얻은때에는 例外로한다

第十六條(許證의 揭示) 作業場의 經營者는 經營許可證을 作業場內의 보기쉬운곳에 揭示하여야한다

第十七條(許可證의再交付) ① 作業場의 經營者는 經營許可證을 紛失 또는 汚損되어 그 再交付를 받으려 할때에는 別紙第11號書式에의한 申請書를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경우에 汚損된 許可證은 이를 申請書에첨부하여야 한다

第十八條(許可證의返還) ① 作業場의 經營者는 그經營許可를 取消당한 때에는 經營許可證을 道知事에게 返納하여야 한다

② 作業場의 經營者가 作業場使用停止의 處分을 받은때에는 經營許可證을 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前項의 경우에 道知事는 許可臺帳과 許可證裏面에 處分要旨를 記載하고 處分期間이 滿了된 때에는 그許可證을 本人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第十九條(證票) 法第20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證票는 別紙第12號書式에 의한다

第二十條(보고) 道知事는 그 管轄區域안의 作業場에 관하여 許可·認可·許可의取消·使用停止處分등의 事項을 수시로 農林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令은 公告한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令 施行當時法附則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作業場의 經營許可를 받은 것으로 看做되는 者는 이令施行日부터 60日이내에 당해許可證의 更新을 道知事에게 申請하여야하며 道知事는 이를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證으로 更新하여 交付하여야 한다

別表

作業場의施設의設備基準

1. 般屠畜場

① 一般屠畜場에는 繫留舍·生體檢査室·作業室·檢査室·消毒室·隔離舍·汚物處理施設을 具備하여야한다

② 繫留舍는 2歲以上의 牛·馬는 1頭式, 기타의獸畜은 적당하게 繫留 또는 收容할수있게 區劃되어야하며, 바닥은 石類·콩크리트·벽돌등 不浸透性, 材料로 施工하고, 給水施設과 적당한 排水裝置를하여

야 한다

③ 生體檢査室에는 檢査에 便利한 保定틀 照明등 필요한 施設을 하여야하며 바닥은 不浸透性材料로 施工한後 計量設備를 하고 淸掃에 便利하도록 施設하여야 한다

④ 作業室은 다음의 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1) 屠殺室·內臟處理室·原皮處理室로 區劃하고屠殺室에는 牛·馬屠殺室과 기타 獸畜屠殺室이 있어야한다

(2) 作業場은 作業量에 適應한 넓이와 充分한 耐久力이있는 構造로하여야 한다

(3) 바닥은 콩크리트·石材등 耐水性이있고 堅固한 材料를 使用하고 排水에 편리한構造를 하여야 한다.

(4) 內壁은 耐水性材料를 사용하여, 바닥에서 最少限 1미터까지는 타이루·콩크리트 또는 이와類似한 材料로 四面을 築造하고 淸掃하기 쉽도록하여야 한다

(5) 天井은 耐水性材料 또는 厚板子를 사용하여 落塵을 防止할수있는 構造로 淸掃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6) 採光 또는 照明이 充分한 構造와 換氣裝置를하여야 한다

(7) 窓에는 鐵網 기타 防鼠·防虫設備를 하고 排水口에는 防鼠設備를 하여야 한다

(8) 사용에 편리한 位置에 冷水 또는 필요에 따라 溫水가 나오는 衛生的인 手洗設備 및 機械器具類의 洗滌 또는 消毒에 필요한 設備를 하여야 한다

(9) 作業量에 適應한 數量과 能力을 가진 衛生機械器具를 設備하여야 한다

(10) 剝皮 또는 脫毛作業後에 屠體의 運搬 기타 作業時에 그屠體를 作業室 바닥에 닿지 아니하도록 設備하여야 한다

(11) 放血을 完全히 할수있는 裝置를 設備하여야한다

(12) 內臟檢査臺·內臟處理臺·內臟運搬具·洗滌用水槽와 計量器를 設備하여야 한다

(13) 作業에 필요한量의 飮料水를 給水할수있는 給水施設을 設備하여야 한다

(14) 作業室과 기타의 建物間의 通路는 콩크리트등으로 鋪裝하여야 한다

⑤ 檢査室에는 檢査에 필요한 器具와 檢査臺등을 備置하고 給水設備를 하여야 한다

⑥ 消毒室에는 消毒에 필요한 設備가 있어야하며 바닥은 不浸透性材料로 築造되어야 한다

⑦ 隔離舍는 屠畜場에서 상당한 距離가 있는곳에 位置하여야하며, 隔離된 獸畜으로부터 排泄되는 汚物一切를 消毒할수있는 設備를하여야 한다

⑧ 便所는 作業室에 影響을 주지아니하는 곳에 位置하고 從業員數에 適應한數로 사용에 편리하도록 設備하여야 한다

⑨ 便所에는 防鼠·防虫設備를하고 衛生的인 手洗設備를 하여야 한다

⑩ 汚物處理場은 다음의 要件을 具備하여야 한다

(1) 汚物留置所는 作業室에서 적당한 距離에 不浸透性材料로 築造하고 뚜껑을 하여야 한다

(2) 血液및 汚水의 處理設備는 作業室에서 적당한 距離에 位置하고, 血液및 汚水의淨化裝置를 갖추어야 한다

⑪ 下水溝는 暗渠로하여야 한다

⑫ 前各項 이외에 農林部長官 또는 道知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設備를하여야 한다

2. 特別地屠畜場

特別地屠畜場의 施設은 一般屠畜場의 設備基準 이외에 다음 各號의施設을 設備하여야 한다

① 冷却室과 冷藏室은 作業量에 適應한 넓이와 機械施設을 具備하여야 한다

② 更衣室을 作業室에 隣接되어야 하며 從業員의 更衣에 편리하도록 設備하여야 한다

③ 沐浴室은 更衣室에 隣接한곳에 位置하여야 한다

3. 簡易屠畜場

簡易屠畜場은 다음各號의 施設을 設備하여야 한다

① 繫留場은 바닥이 乾燥하고 排水施設을 갖추어야하며 淸掃에 편리한 構造로하여야 한다

② 作業室에는 다음의 設備를하여야 한다

(1) 內臟과 原皮를 각각 區分處理할수있도록 區劃하여야 한다

(2) 바닥은 不浸透性材料로 堅固하게 築造하고 排水設備등을 淸掃에 편리한 構造로하여야 한다

(3) 換氣와 採光이 잘되도록 窓口를 設備하여야 한다

(4) 內臟檢査臺·洗滌用水槽와 計量器및 屠肉을 거러놋는 設備를하여야 한다

③ 檢査室에는 檢査에 필요한 器具와 檢査臺帳을 備置하여야 한다

④ 汚物處理場은 作業室로부터 적당한 距離에 位置하고 充分한 크기로 뚜껑을하여야 한다

⑤ 生體檢査場은 檢査에 便利하도록 保定을 設備하

여야 한다

⑥ 消毒에 필요한 藥品·器具등을 備置하고 이를 保管할수있는 場所를 設備하여야 한다

4. 乳處理場과 畜産物加工場의施設의 設備基準

① 各作業場은 다음各號의 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1) 乳處理場은 受乳室·處理室·洗瓶室·檢査室(實驗室)·冷藏庫로 각각 區劃되어야 한다

(2) 集乳場은 乳取扱室·器具取扱室로 區劃하고 作業量에 適應한 冷藏庫를 設備하여야 한다

(3) 乳加工場은 受乳室·處理製造室·器具取扱室·準備室·包裝室·製品倉庫·檢査室과 冷藏庫를設備하여야 한다

(4) 獸肉加工場은 製造室·準備室·冷藏庫와 檢査室을 設備하고 필요에따라 燻煙室을 設備하여야 한다 다만, 原料를 供給하기 爲하여 獸畜을 屠殺解體할 경우에는 別表의 3簡易屠畜場施設의 設備基準에의한 設備를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타이루·콩크리트·石類등 耐水性이 있는 材料를 사용하고 排水에 편리한 構造로하여야 한다

③ 內壁은 耐水性材料 또는 厚板子를 사용하고 바닥에서 最少限 1미터까지는 타이루·콩크리트 또는이와類似한 材料로 四面을 築造하고 淸掃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④ 天井은 耐水性材料 또는 厚板子를 사용하여 落塵을防止할수있는 構造로하여 淸掃하기 쉽도록하여야 한다

⑤ 採光 또는 照明이 充分한 構造로하고 換氣裝置를 設備하여야 한다

⑥ 出入口의門은 自動開閉式으로 하고 窓口其他開放하는 곳에는 鐵網등으로 防鼠·防虫設備를 排水口에는 防鼠設備를 하여야 한다

⑦ 下水口는 暗渠로하여야 한다

⑧ 사용에편리한 位置에 衛生的인 手洗設備와 機械器具類의 洗滌 또는 殺菌에필요한 設備를하여야 한다

⑨ 作業量에 適應한 數量과 能力이 있는 衛生的機械를 設備하고 作業過程에따라 冷藏및 冷凍施設을 하여야 한다

⑩ 作業過程中直接製品이 接觸하는 部分은 綿密하게 손질할수있고 洗滌·加熱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消毒할수있는 것이라야 한다

⑪ 給水施設은 完全히 殺菌處理된 水道水 또는 公共試驗機關에서 飮用에적당하다고 인정한것으로 豊富하게 給할수있는 設備를 하여야 한다

⑫ 便所는 作業室에 影響을 주지아니하는 곳에 位置하고 從業員數에 適應한數로 사용에 편리하도록 設備하여야 한다

⑬ 便所에는 防鼠·防虫設備를 하고 衛生的인 手設備를 하여야 한다

서 울 特 別 市 第 一 屠 畜 場

場長 朴 炳 昭

서울特別市城東區馬場洞二二〇番地

電話 ⑤ 3965